



교육부

2025년-20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

2025. 3.

교 육 부
(지역인재정책관)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22~'24 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	3
III. '25~'27 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방향	5
IV. 세부 지원계획	7
1. 사업 개요	7
2. '25년 사업비 배분	9
3. 사업비 집행기준	12
4. 성과평가 계획	14
5.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18
V. 기타 행정사항	21
VI. 향후 일정	21
[붙임1] '25년~'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22
[붙임2] 정량성과 교육여건 지표 정의	23

I.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여건 개선 필요

-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고등교육은 이미 **보편화*** 단계 진입하였음에도 국가경쟁력 대비 **대학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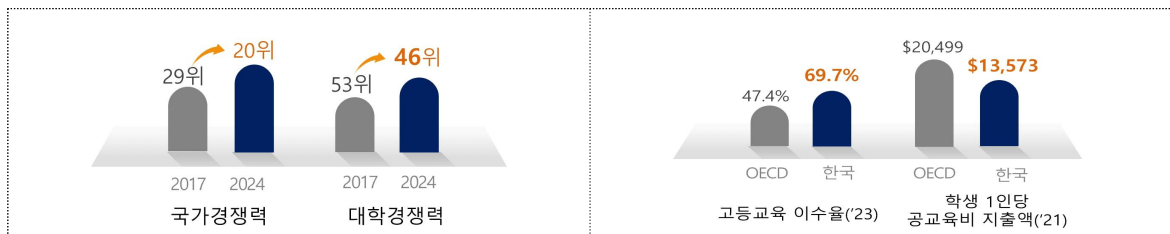
* 대학진학률 74.9%(교육통계, '24), 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7%(OECD, '24)

** 국가경쟁력은 67개국 중 20위로 상위권이나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46위로 하위권에 위치(IMD, '24)

-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미래 투자는 여전히 미흡

* 중앙·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한국사학진흥재단) : ('18) 13.7조원 → ('22) 17.8조원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573로 OECD 평균(\$20,499) 3분의 2 수준(OECD, '24)



자료: IMD 국가경쟁력평가('24), OECD 교육지표('24)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에 기반한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지원 필요**

□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강화 요구

- 생성형 AI 등 급속도로 성장하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양해**지는 상황

※ 21세기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 분석적사고, 창의적사고, 탄력성/회복력, 기술활용능력, 리더십 등(WEF 미래일자리보고서, '23)

- 대학이 **학생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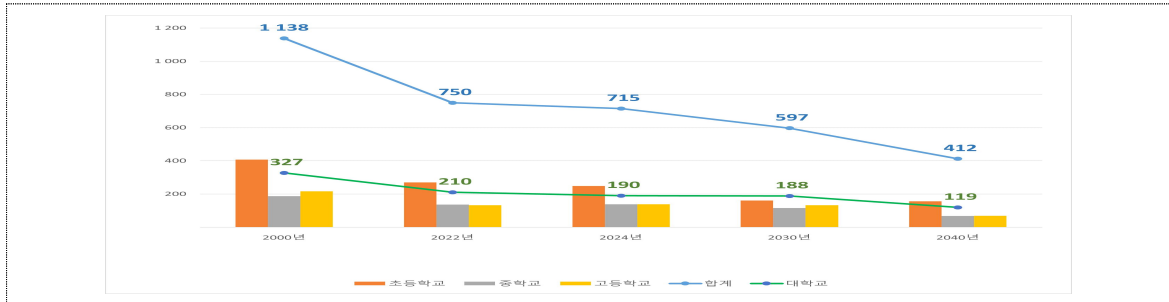
※ 4개 신기술분야(AI·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 '27년까지 약 6만명 부족 예측(고용노동부, '23.8.)

▣ 미래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대학의 선제적 교육혁신 중요**

□ 학령인구 감소 대응 대학의 적정규모화 노력 시급

-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급감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할 것으로 예상

※ 대학교(18-21세) 학령인구(만명) : ('00) 327 → ('24) 190 → ('30) 188 → ('40) 119



자료: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2000-2072)

- 수도권으로의 학생 쏠림*과 학령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을 감소로 이어져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경쟁력 저하 우려

* 최근 10년간 학생 수 비중(KEDI, '24) : (수도권) 38.8% → 42.9%, (비수도권) 61.2% → 57.1%

** '22년~'24년 신입생 충원을 : 수도권 일반대(99.4%) > 비수도권 일반대(95.8%)

▣ 입학자원 급감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 전체적인 구조개선 추진

2 주요 경과

'19년~'21년
(1주기)

- (내용)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재정 확충을 통해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 지원
 - *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인재)
- (지원규모) 6,951억원('21년 기준) / 교당 평균 48.3억원 지원
- (지원대상) 자율개선대학 131교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 12교
- (주요성과) 대학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교육의 질 유지하도록 지원

'22년~'24년
(2주기)

- (내용)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체질 개선과 전공자율선택제 등 교육혁신의 기반 마련
- (지원규모) 8,852억원('24년 기준) / 교당 평균 75.4억원 지원
- (지원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교
- (주요성과)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혁신 등 대학의 자발적 교육혁신 지원

표.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

□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할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확대
※ 1교당 평균 지원 : ('22) 49억원 → ('23) 69억원 → ('24) 75억원
- 일반재정지원 사업 취지대로 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인건비 등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기준 최소화
※ 인건비는 사업 참여여부 관계없이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한도 내 편성 가능 등

현장의견

- ▶ 장기간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은 특히 중·소규모 대학의 재정 위기 해소에 큰 도움
- ▶ 재정 지원을 통해 강의실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했고, 이 사업은 특정한 학과·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전체에 걸친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출처: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요자 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25.2.)

□ 대학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지원

-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학문에 기반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자율선택제 등 교육혁신 지원
※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 : ('24) 9,925명 → ('25) 37,935명 *수도권대 51교, 국립대 22교
- 정성평가 시 영역별 절대평가(종합등급 미산출) 방식으로 개선('23),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여 공유·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
※ (기존) 지표별 점수 합산 후 최종 등급 부여 → (개선) 지표별 등급 부여 및 최종 등급 미부여

현장의견

- ▶ 혁신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선 및 새로운 교수법 도입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성장·발전한 모습을 보였음
- ▶ 대학별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 등과 같은 공통적인 평가 기준 외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대학 자체 혁신을 강조하는 평가 지표가 반영될 필요

출처: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요자 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25.2.)

□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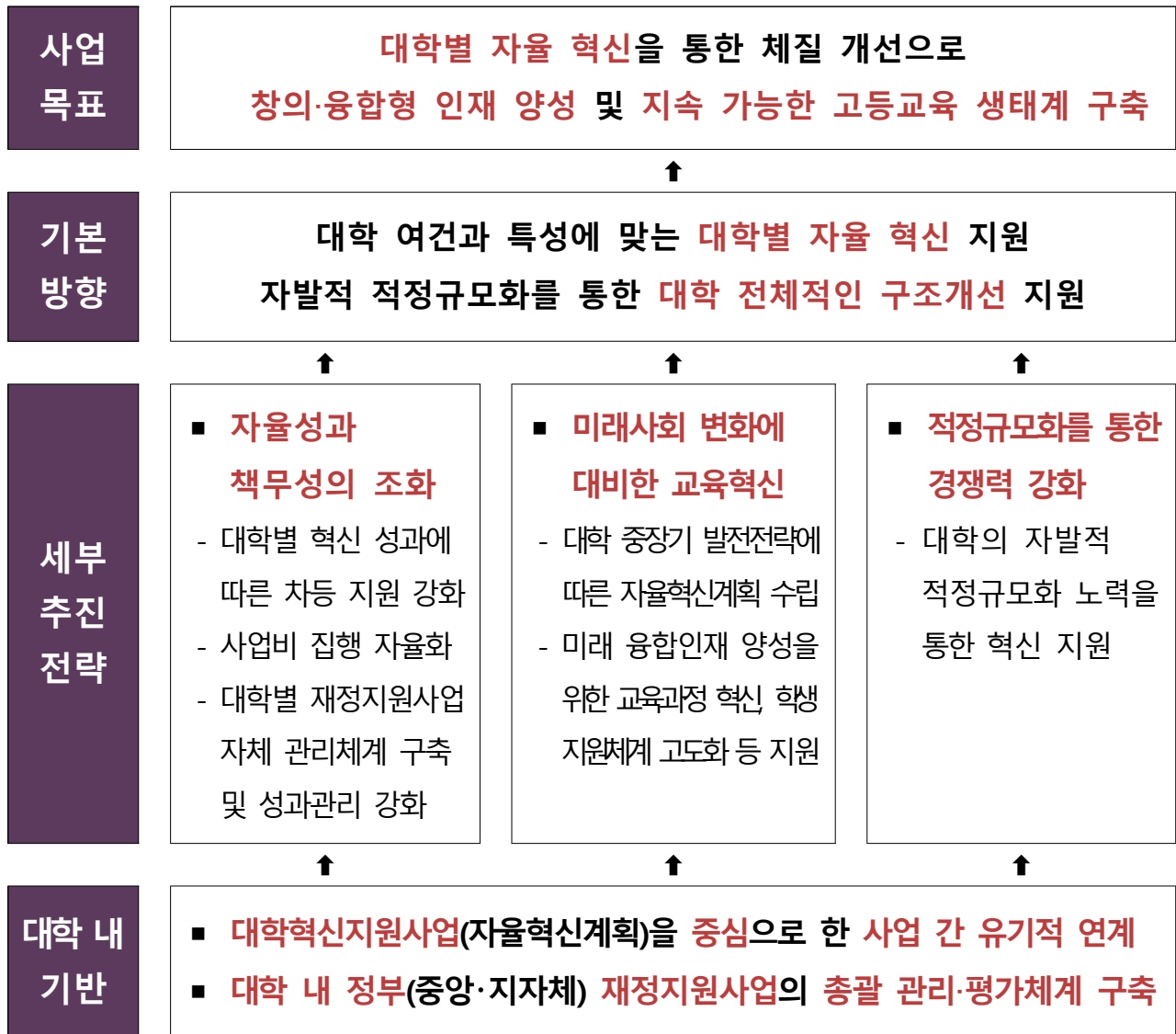
- 대학의 미충원('21년 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학사구조 개편 등 지원
※ '22년~'25년 일반대학 총 43교 6,700여명 감축(936억원)

< 대학별 교육혁신 사례 >

유연한 학사구조	<성균관대> 유연학기제(6-module) 도입 : 1년을 8주 단위 6개 모듈로 구분하여 수업형태를 다양화하고 학년도 단위 교수·학습계획을 개인화하여 성장 지원 ※ 기본수업형태 외에 ①8주(on)+ 8주(off), ②8주(off)+8주(on), ③8주 집중 수업모델을 도입하여 방학과 연계한 몰입기간 확보	
	<서강대> 다전공제도 도입 : 계열, 전공, 인원, 성적 등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최대 3개까지 전공 조합 가능('23.2월 기준 전체 졸업생 40% 다전공 이수) ※ 제1전공 + 제2/제3전공(다른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 마이크로전공 ▸ 분야별 기초역량 (인문학, SCIENCE,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신설, 융합형 인재 양성 추진	
	<건양대> 대학-지역사회 연계 융복합교육 확산 : 지역 첨단신산업과 연계한 AI·SW 단과대학 및 반도체공학과 신설로 지자체 지원을 유도하고 특성화 교육과정 혁신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 등 산업-학계 협력 모델 구축	
	<포항공대> 경계 없는 무은재(無垠齋) 교육 운영 : 학부생 전원을 소속 학과 없이 단일계열로 선발하여 성적에 상관없이 전공학과 선택·변경이 4-1학기까지 가능(학과 간 경쟁 촉진). 무학과 선발 우수사례 공유·확산('23년 기준 대학3회, 포럼1회, 공공기관 1회)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이화여대> 인문학 중심의 교과·비교과 복합 인증제(H-인증제) 활성화 : 교양교육의 핵심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적 능력 개발 촉진을 위해 일정 교양교과목을 이수하고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인증 부여. 사회 진출시 활동자료로 제출 가능	
	<한양대> 에듀테크 기술 접목 교육혁신 모델 고도화 - 전공자율선택제 학생 교육·상담·소통을 통합한 학습 경험관리플랫폼(LXP) 개발 - 대학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텔레프레전스 기반 홀로그램 공유교육 모델 확산(21개 대학, 26개 캠퍼스)	
	<단국대> 교수역량(FAME UP) 및 학생역량(STEP PLUS)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수자 미래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수법 개발 등 프로그램 고도화, 교수-학생이 함께하는 교과-비교과 연계형(307개팀, 50과목)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생지원 및 관리체계	<세종대> 전주기 관리형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 구축 : 통합(교수-재학생-전문가) 상담체계 구축 및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위한 진로탐색·설계 지원시스템 마련 - 평생지도교수제를 확장하여 1학년 전담 AA(전임교수) 제도 도입, 학과 소속 신입생 집중지원, 소속감 강화와 중도탈락 예방(활동비 지원, 강의시수 경감 등)	
	<서울대> 전공설계지원센터 설치 : 학사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Academic Advisor가 상주하며 학생 흥미와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업계획 수립 지원 및 상담 상시 진행('23~'24.5월 1,235명 지원)	
	<조선대> 同Go同樂 캠퍼스 : 다차원적 학생 전방위 케어(마음돌봄, 위기학생 관리, 소수학생 맞춤 케어 등), 비교과 및 경험중심 프로그램(지역연계형, 전공탐색형) 다양화	
행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	<가천대> 교수 선발 및 배치 혁신 : 교수 지원자가 전공을 선택하는 '자율분야선택제' 도입하여 학과/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교육 및 연구 중심의 교원 선발	
	<한동대> 매년 학생 선택에 의한 학부별 재학생수, 전공·부전공 등을 고려하여 교원정원 및 예산, 공간을 주기적으로 재배정	

Ⅲ. '25~'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 모든 대학이 자율적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적정규모화 등 대학 전반적인 교육시스템 개선에 주력

□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무성 조화

- (자율성 확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를 총액으로 배분하여 재정 활용의 유연화 및 집행 자율성 지속 확대
 -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 최소화
- (책무성 제고) 각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에 대한 차등을 확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 운영의 책무성 제고
- (자체 성과관리) 대학이 수행하는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자체 성과관리·환류를 위해 자체 총괄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운영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지원

- (혁신전략 수립)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과정 혁신 및 적정규모화 계획 등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교육혁신 지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 교육혁신 추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 전체 대학에 교육혁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하되, 모집단계 혁신성과 등 지역별 여건(수도권/비수도권)을 고려한 평가 실시

□ 자발적 적정규모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적정규모화)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미충원 등으로 어려운 대학 중심으로 구조개선 추진
 -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 등 학사 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금 지원
- (선제적 감축) 학생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여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

IV. 세부 지원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5. 3. 1. ~ '28. 2. 29.(3년)
- (지원 대상)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 * 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대학 및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 ※ 사업기간 중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은 지원금 일할 계산
- (지원 내용)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연구·기타 총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블록 편당 방식으로 지원
- (지원 규모) '25년 7,955억원 ※ 사업관리비 30억원 포함

□ 자율혁신계획 수립

- (주요 내용) 대학별 여건에 맞는 혁신전략 및 학사구조 개편 등과 연계한 적정규모화 계획 등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 요약본을 사업 협약 체결(3~4월) 시 사전 제출하며, 이후 학생 정원조정 계획 확정사항, 예산 집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자율혁신계획서 제출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38교 전체
 - ※ 자율혁신계획 미제출 시 지원 불가(혁신 방향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후 제출)
- (결과 활용) 자율혁신계획을 토대로 각 대학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평가 시 추진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환류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각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혁신 성과 환류

< 자율혁신계획 주요 내용 >

I.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 대학 현황 자체 진단, 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대학별 중점 특성화 전략 제시

II. 적정규모화 계획

-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제시
- 학부-대학원 정원 조정, 정원 유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정원으로의 전환 등 정원 관리 전략 제시(해당 시)

III. 대학혁신전략 및 재정 투자계획

- 영역별·분야별 혁신전략 및 대학 운영 혁신전략

< 주요 내용 예시 >

- ▶ (교육혁신) 학생의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현 교육과정의 개선·보완 및 학사제도 개선,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개선 방안 등 구축 등 (예)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수법 개선, Academic Advisor의 맞춤형 교육 지원, Joint Appointment 제도 운영, 학생 진로탐색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전공 및 교양 융복합 교육과정, 디지털 교양교육 운영, 지역 내 고교교육과정 연계 등
- ▶ (기타혁신)
 - (대학 운영 공공성·투명성 강화) 자율혁신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학내 구성원 참여 및 목표·전략 공유 방안 및 대학 운영 공공성,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수립 (예) 학내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 학내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수립 등
 - (대학 간 공유·협력)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대학별 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상호 간 연계 등 공유·협력 강화 방안 제시
 -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대학 교육 및 운영 전반의 환경·사회·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등
 - (연구 등 기능 강화) 적극적·자발적 연구문화 조성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등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혁신지원사업 방향과 연계한 대학의 기능 강화 방안 등
 - (구조개선 계획) 대학 특성화 계획 등과 연계한 학과 개편 등 구조개선 계획(희망시)

※ 대학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구조개선 경영자문(컨설팅)을 받은 경우 자문결과 활용 권고(계획 및 실적)

- (재정 투자계획)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교육부·타부처, 지자체 등) 간 연계성 및 유사·중복 여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 투자계획 제시

IV. 총괄 관리체계 구축

- (거버넌스 구축) 대학혁신위원회 및 대학혁신운영위원회 구축·운영 및 학내 의견수렴의 계획·실적 제시

※ 대학 규모,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혁신위원회로 통합 운영 가능

- (총괄 사업 관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적정규모화 계획, 재정 투자계획 및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일관성 및 연계성

-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근거한 종합 투자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사업 간 총괄·연계 방안, 성과평가·환류 방안 제시

※ 교육부 포함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제반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학 내 재정 효율화 방안 제시

- (성과관리)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성과 확산 및 환류 방안 구축

□ 대학별 총괄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강화

- (관리체계 구축) 대학 내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평가·환류 강화
 - (대학혁신위원회) 자율혁신계획상의 혁신전략에 근거한 투자계획 수립 및 자체 성과관리 등 재정지원사업 운영 총괄 관리
 - ※ 총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중심으로 구성, 주요 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 필수 포함
 -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 등 대학 전반적인 사업 관리
 - ※ 혁신지원사업 총괄 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 외부전문가 및 재학생 필수 포함
 - ※ 각 기능은 대학 내 구축하되, 대학 규모,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혁신위원회로 통합 운영 가능

2 '25년 사업비 배분

※ '26년~'27년 사업비 배분 세부 내용은 연도별 기본계획에서 확정

1 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기간) '25. 3. 1. ~ '26. 2. 28.
- (지원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38교(사립 135교, 국립대법인 2교, 공립 1교)
 - ※ 사업기간 중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은 지원금 일할 계산
- (지원규모) '25년 7,955억원 ※ 사업관리비 30억원 포함
- (사업비 구조) ①사업비 총액을 정량성과(50%) 및 정성성과(50%)로 구분하고, ②정량·정성성과 사업비를 권역별 '학부 재학생수(50%)'와 '학교수(50%)' 기준으로 배분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부산·울산·경남권

정량성과(50%)		정성성과(50%)			대학별 지원액
기준 포물러	기회균형 포물러 (700억원)	교육혁신 (80%)	자체 성과관리 (20%)	적정규모화 지원금 (300억원)	
		+			=

▶ 재학생 수·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

2 정량성과

- (지원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38교(사립 135교, 국립대법인 2교, 공립 1교)
 - ※ 국립대법인, 공립대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지원
 - ※ '25년 신규 지원대학(21교)은 기회균형 포물러 사업비만 지원('25년 재정진단 통과 시 '26년 정량성과 사업비 전체 지원)
- (사업비) 4,012.5억원 ※ 사업관리비 제외
- (사업비 구분) 기준 포물러 + 기회균형 포물러*로 구분
 - * 기회균형 포물러(700억원) = 규모지수(500억원)+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200억원)

< 정량성과 사업비 구분 >

기준 포물러			+	기회균형 포물러		= 대학별 정량성과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규모지수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수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수	

- (기준 포물러) 권역별 기준 포물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대학별 기준경비, 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 (기회균형 포물러) 권역별 기회균형 포물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규모(재학생 수),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를 고려하여 배분

< 정량성과 사업비 구성요소 세부 내용 >

구 분		내 용
기본 배분 지표	기준경비	■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규모지수	■ (기준 포물러)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 ■ (기회균형 포물러) 학부 재학생 수
	교육여건	■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0.4)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 산출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1.5)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text{지표별 변환점수} = 1 + \left(\frac{\text{지표별 점수값} - \text{지표별 평균값}}{\text{지표별 표준편차}} \times 0.4 \right)$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2점, 최고점 1.8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	■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수 = 기초·차상위 학생수×1.0 + 1구간 학생 수×0.9 + 2구간 학생 수×0.8 + + 8구간 학생 수×0.2

- ※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은 '24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 ※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는 '24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③ 정성성과 [교육혁신+자체 성과관리]

- (지원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38교(사립 135교, 국립대법인 2교, 공립 1교)
- (사업비) 3,612.5억원 ※ 사업관리비, 적정규모화 지원금 제외
- (사업비 구분) 교육혁신(80%) + 자체 성과관리(20%)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지표별 절대평가를 통해 지원
- (성과평가) 교육혁신 성과(계획 포함) 및 자율 성과지표 구성·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 실시
- (결과활용) 권역별 정성성과 사업비 총액(적정규모화 300억원 제외)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지급

④ 정성성과 [적정규모화]

- (지원대상) 전체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4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6~'27)을 수립한 대학
※ 2차년도 이후 지원 규모 및 비율, 충원율 기준 등은 연도별 기본계획에서 확정
- (사업비) 300억원
※ 대학별 지원금 상한액, 적정규모화 계획 총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지원 규모 감액 시 성과평가에 따른 정성성과 사업비 배분에 활용)
 - 선제적 감축 지원금(210억원) : '24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급(1교당 최대 10억원)
 -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90억원) : '24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각 지원금 규모(210억/90억원) 내,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26~'27년)에 따라 권역 구분 없이 배분
 - 입학정원 감축 실적에 따라 지원하며, 정원 감축 완료 시 3주기('25~'27) 내 지속 지원
- ※ '25년 대비 실질적인 정원조정 효과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예정이며, 적정규모화 지원 대학은 수혜기간 동안 교육부 승인 첨단학과를 제외한 정원 증원 불가

< 적정규모화 정도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 >

적정규모화 계획('26~'27) 상 총 감축 규모
(=선제적 감축+미충원분 감축)

선제적 감축 지원금(210억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90억원)
선제적 감축(미충원분 대비 초과 감축) 환산정원(명)		미충원분 감축 환산정원(명)
'24년 신입생충원율 98% 이상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3	미충원 규모 내의 정원감축 인정분(명) ×1
'24년 신입생충원율 95% 이상 98% 미만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2	
'24년 신입생충원율 95% 미만	초과 정원감축 인정분(명) ×1	

※ 신입생 충원율(%) = {정원 내 입학자(명) / 정원 내 모집인원(명)} × 100

※ 환산정원 = 정원감축 인정분 ×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가중치

- (이행점점) 매년 성과평가 시 자율혁신계획 상의 기존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여부 점점 →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사업비 조정

▶ '25년 적정규모화 계획('26~'27) 인정 기준

인정 (부분인정)	1. '26~'27년 입학정원 감축 2. 대학원 정원 증원을 위해 학부 정원 감축 시 감축인원의 50% 인정 3. 입학정원 모집유보 인원의 50% 인정 4. 정원을 성인학습자 등 학령인구 외 정원 전담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인원의 50% 인정 ※ 2~4번 항목은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후 대학별로 복구 여부를 자율 결정 가능하나, 복구 시에는 법령이 정하는 정원조정 요건 충족 필요(기준 별도 안내) ※ 3번 모집유보 해제 시 연도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리
	불인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미인정 2. 행정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미인정 3. 전문대학이 학제개편(2년제↔3·4년제) 후 편제정원을 유지하면서 입학정원은 줄어드는 경우 감축 실적으로 미인정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증원으로 미인정

※ 대학원·모집유보·성인학습자 정원 부분 인정범위는 변동 가능

※ 2주기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과 관련된 유지 의무는 지속 필요

3 사업비 집행기준

□ 사업비 편성 방향

- 대학에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분야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

- 기회균형 포플러 사업비(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 산출액)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영역에 우선 편성 권고
 - 의과대학 '25학년도 신입생 및 '24학년도 복학생 등 대상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가능
 - 우선 편성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혁신지원사업 이외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 ※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

□ 세부 집행기준

- (원칙)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집행불가 항목)는 최소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 (인건비)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에 집행 가능(총액 한도 25%)하나, 국고 사업비를 통한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은 불가
 - '25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

※ 기존 교직원의 일괄 임금 인상 및 명예퇴직금 등 목적으로는 활용 불가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10% 한도 내 편성 가능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

비 목	집행불가 항목	총액 한도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장학금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제한	-
인건비	-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 ※ 기존 교직원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25%*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10%

* 2025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서는 최대 30% 집행 가능

□ 지원 기간 및 대상

- (방향) 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각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 과감히 혁신하는 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
- (대상/시기) 일반재정지원대학 138교 전체 / '25. 6~7월 중(예정)

□ 평가 지표 및 내용

- 혁신 성과, 자체 성과관리 2개 영역에 대하여 평가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내용(안) >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배점)	비고
혁신 성과	1. 교육혁신 성과(80)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성과 및 계획	정성지표 절대평가
자체 성과관리	2.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20)	
	•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계획(실적)	정성지표 절대평가

① 혁신 성과

-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재 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의 혁신 의지 평가
 -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추진 성과 및 전략 평가
- ※ 그동안 대학이 추진한 모든 혁신 성과 및 '25~'27년 추진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혁신 성과 주요 내용 >

	주요 내용(예시)	평가 주안점
교육 혁신	•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 등 성과 ※ 기성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 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개편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등 •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 개편 ※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 모수 제외 학과의 제외 타당성 - 기준 차이로 정량 미반영된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 -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전공자율선택 노력 • 재학단계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전과, 복수전공 등) • 학과 개편 등 구조개선 계획 및 실적	•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내 체제 구축 중점 평가 • 양적 요소(수혜학생 규모, 운영 규모 및 비율 등) 고려 • 혁신과제의 적극성·도전성 등 난이도, 학내 구성원 간 협의 등 평가
제도 기반	• 전공자율선택을 뒷받침하는 학내 제도 개선 -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 (예)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재정·공간 등 주기적 재조정,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배치*,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한 교원에 포인트 제공 및 연봉으로 연계 등 * (예) 단과대학 소속, Joint Appointment 등 -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 ※ (예) Academic Advisor의 맞춤형 교육 지원, 전담 지도교수 배정 등 - 기타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학 내 자율 교육혁신 • 학생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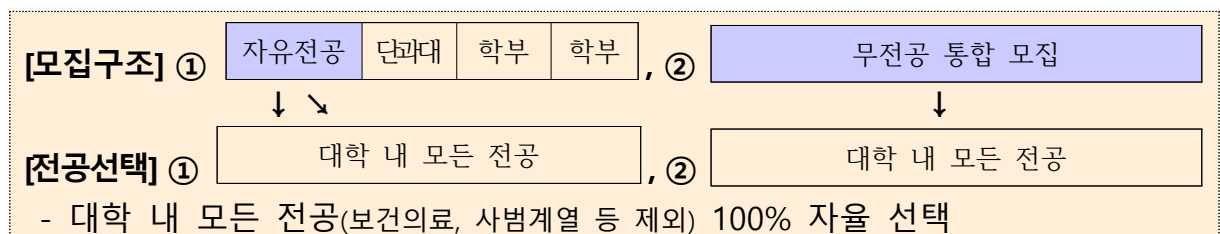
※ 지역 및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② 혁신 성과(가산점)

- 수도권대(60교)는 '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대해 가점 부여
※ ('24) 혁신성과 100점 + 가점(최대 10점) → ('25) 혁신성과 100점 + 가점(최대 15점)

① 모집단계 혁신 성과 인정 유형

(유형1)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예: 자유전공학부 등)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자율 선택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

- * 계열·단과대 내 전공·학과를 일부 분리모집하는 경우도 인정
- 다만, 혁신성·적절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에서 반영 가능

모집구조 ①	인문계열			자연계열		기타	, ②	공과대학(단과대)		기타
	↙ ↘		↙ ↘		↙ ↘			↙ ↘		↙ ↘
전공선택 ①	학과 (인문)	학과 (인문)	학과 (자연)	학과 (자연)	기타		, ②	학과 (단과대 내)	학과 (단과대 내)	기타

- 계열·단과대 내 모든 전공 100% 자율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선택

② 모집단계 혁신 성과에 대한 가점표

		유형 1 + 유형 2 (단위: %, 이상~미만)					
		0~5	5~10	10~15	15~20	20~25	25~
유형 1	0~5	0	4점	5점	6점	8점	10점
	5~10	-	5점	6점	8점	10점	12점
	10~	-	-	8점	10점	12점	15점

※ 유형별 모집단계 혁신 비율 = $\frac{\text{해당 유형 입학정원}}{\text{전체 입학정원}^*}$

* 입학정원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도 인정

③ 모집단계 혁신 성과 인정 관련 모수 산정 범위

전공 유형	모수 포함 여부
정부 정원관리 전공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모수 제외
각 부처 인재양성사업에 따른 전공, 희소·특수학과, 계약학과, 재직자·성인학습자·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 등	대학별 자율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수 제외
예체능계열, 종교계열, 첨단학과(교육부 승인)	대학별 자율적 모수 제외 ※ 모수 제외 학과에 대한 전공선택권 부여는 대학 자율적 결정(정성평가 반영) ※ 10% 범위에 미포함

* 입학정원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도 인정

③ 자체 성과관리

-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 관리 계획 및 환류 체계의 적절성 평가
 - 자율 성과지표 구성의 타당성,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또는 달성도)
 - 학내 성과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자체평가 등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의 논리적 정합성 등 평가
- ※ 자체 성과관리 반영비율 확대 : ('24) 10% → ('25) 20%

□ 평가방법 및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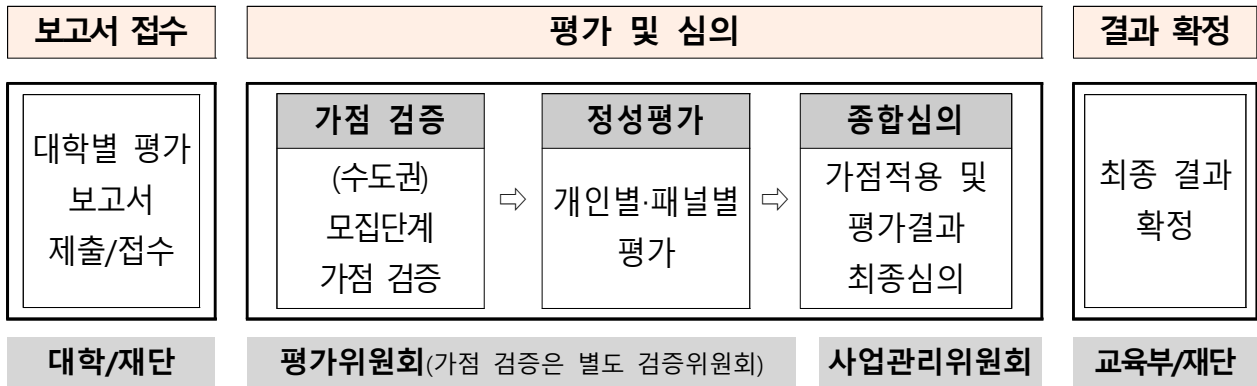
- (평가 방법) 정성지표(혁신 성과, 자체 성과관리)는 **패널별 평가**로 점수 산출하고, 서면검토 및 질의응답을 통한 지표별 절대평가 실시
- (결과 산출) 평가영역별로 패널 내 순위 및 평점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영역별 합산 점수(등급)는 미도출
 - 수도권외의 경우 교육혁신 성과 가산점을 합산하여 등급 도출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95점 미만), B(80점 이상 90점 미만), C(80점 미만)
- (사업비 배분) 사업비를 ①권역별* 배분 후, ②지표별** 배점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③대학별 전체 포물러 및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
 - * 권역별로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기준으로 배분
 - ** 교육혁신 성과(2,890억원), 자체 성과관리(722.5억원)
 - *** 성과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 : **A(1.5), B(1.0), C(0.5)**
 - '교육혁신 성과' 영역은 **S등급(2.0)**까지 부여

※ 비수도권 4개 권역별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A등급 가중치는 1.7, S등급 가중치는 2.2로 상향 적용
- (성과관리 강화) 혁신 성과 지속 여부를 고려한 성과관리 강화
 - (2년 연속 S등급) 정성성과 사업비 30% 추가 지원
 - (2년 연속 C등급) 정성성과 사업비 미지원 + 정량성과 사업비 30% 감액

※ 교육혁신 성과가 '25년-'26년 연속 S등급 또는 C등급일 경우 해당

< 평가 주요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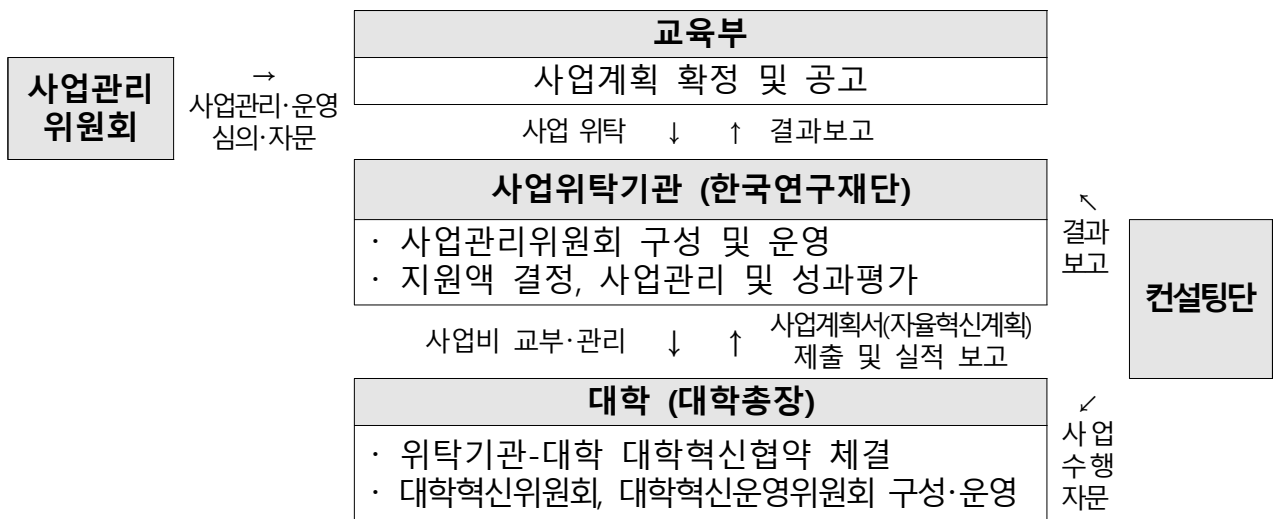


※ 절차 및 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세부계획 안내 시 확정·안내 예정

5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체계 및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분석,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및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 자문, 지원대학별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교육혁신 성과 및 전략, 자율혁신계획, 재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자문 지원
 - ※ 대학관계자, 연구원 등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대학별 성과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한 대학 자문·권고 및 컨설팅 지원
- (대학) 지원대학의 장은 위탁기관과 '대학혁신협약' 체결
 - 협약 기간 및 당사자, 의무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관리·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사업 관리

□ 협약 체결

-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총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책무성 확보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교부)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며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집행)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자율혁신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사업개시일('25.3.1.)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先)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점검) 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 시 재정집행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사업위탁기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 국고 지원금은 '26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 단 사업비 지급사가규모 대학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범위 조정 가능
 -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 (결과보고) 대학은 연차별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를 제출하며, **성과평가 보고서**(성과목표 달성여부 포함) **첨부** 제출

□ 성과 관리 및 확산

- (자체 성과관리) 자율혁신계획의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를 구축하여 자체 성과관리 추진
* 예시: 성과지표 설정,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등을 위해 성과관리본부(IR) 구축
- (우수사례 확산)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 등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성과공유회, 성과포럼 등 개최, 백서 발간
- (컨설팅) 교육혁신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개선을 위해 컨설팅 지원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비리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 발견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포함한 패널티 부여
- 사업비 삭감, 환수 등에 따른 잔여 사업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다른 지원대학에 배분 가능
※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삭감·환수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비 재지급 가능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V. 기타 행정사항

□ '25년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

- 대학별 교육혁신전략 추진 및 성과평가 준비 등 일정을 고려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최종 확정·지급

1차 사업비 지급 및 대학별 집행	'25.3.~
↓	
성과평가 실시	'25.6~7월
↓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	'25.8~9월
↓	
집행완료 및 정산	~'26.2월

VI. 향후 일정

- 대학별 '25년 사업 협약 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25. 4월
-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성과평가 실시 : ~'25. 7월
-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 ~'25. 9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참여 대학(’25년 기준)**

권역	대학명
수도권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양대학교,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위덕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충청권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유원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호남권	광신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가야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 ’26년 재정진단 및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참여 대학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여건 지표별 상세 기준

용어의 정의, 인정 기준 등은 2024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되어 있음

지표	세부 내용
재학생 충원율	$\frac{\text{정원 내 재학생 수(명)}}{\text{학생 정원(명) -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times 100$ ※ 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frac{\text{총 교육비(원)}}{\text{등록금 수입총액(원)}} \times 100$ ※ 국립대 법인, 공립대는 138교 기준 표준화 ※ 사립대는 135교 기준 표준화 1) 총 교육비 - 국립대법인·공립대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사립대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2) 등록금 수입총액 : '학부+대학원 등록금 수입 총액' 항목을 활용함 ▶ 기준 : 각 회계연도 결산 ▶ 공시항목 - 교육비 : 국립대법인·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 등록금 수입액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